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146
----------	------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1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2015. 6. 3.부터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에 위탁 운영 중으로, 2019. 7. 1.부터 3년의 재위탁 기간이 2022. 6. 30.자로 만료될 예정임
-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2년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2차(청소년정책과 적격자심의위원회)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음
- 다. 현 위탁법인(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이 가정 밖(위기) 청소년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살려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2024. 6. 30.까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재계약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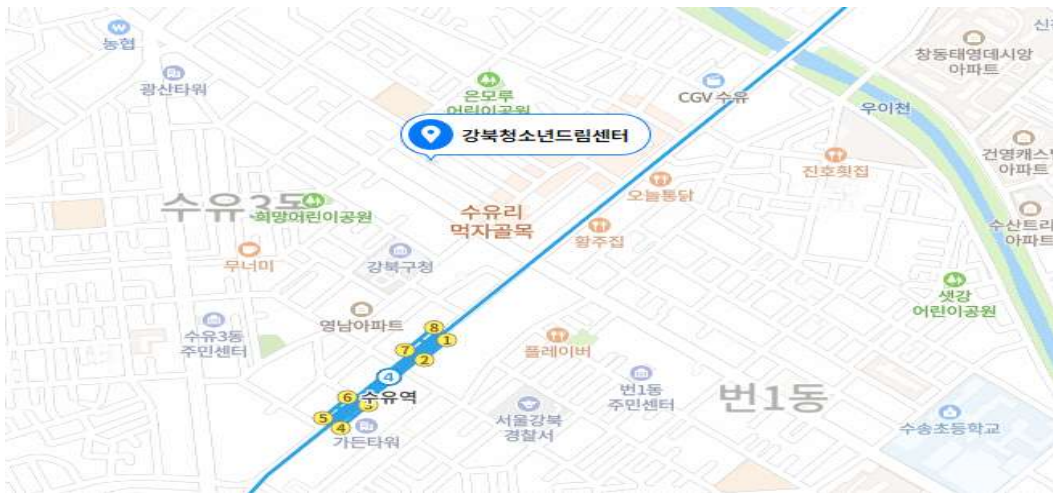
-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가정 밖(위기)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됨
- 현 위탁법인(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은 1967년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후 1969년 4년제 대학 설립인가 받아, 2021년 현재 신학과 외에 교육학과 등 학부 9개 학과, 사회복지대학원 등 10개 대학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청소년교육 및 상담·복지에 기여하고 있음
- 강북청소년드림센터 외에 위기에 처한 학생대상으로 교육복지센터 운영,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가족플라자, 교육·문화·돌봄서비스 및 전문상담을 통한 가족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미취학 아동의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종합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온 바, 향후 2년간 동 법인에게 재계약을 통해 운영토록 하고자 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위기·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일시보호사업
- 위기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사업
- 청소년 상담, 보호 기관·단체 연계 활동 지원
- 가출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사업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40길 5-26
- 시설규모 : (대지) 212.2 m^2 , (연면적) 333.37 m^2
- 주요시설 : 상담실, 교육실, 숙소, 사무실 등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2년(2022. 7. 1 ~ 2024. 6. 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24백만원('22년)
- 산출근거
 - 인건비 400백만원, 운영비 118백만원, 사업비 106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황미연 (☎ 2133-4128)